

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2. 4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

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조, 제40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김○엽	71.2.28	대구시 달서구 (이하생략)	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지	수급자격 불인정(피보험자격 취소)에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	폐문부재
이○원	70.3.1	대구시 달서구 (이하생략)			폐문부재

4. 공고 기간: 2023. 12. 4. ~ 2023. 12. 2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김남순(Tel. 053-605-65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